

---

진해~거제 주배관 제1공구 및 제2공구 입찰 관련  
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(4)

---

2013. 4. 8

한국가스공사

□ 적정성심사 및 설계내역서 관련

순번	질의사항	답변내용	구분	공구
1	Q. 부적정 공종상 세부공종의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각 비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평가방법은?	A. 당공사가 배부한 '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' 1-바-1)-마)와 1-바-1)-바)항 및 당공사 '적정성심사 세부기준' 별표 2-주)-①-5 항에 따라 평가하며, '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(평가 2)' 평가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. ※ 당공사가 공지('13.4.5)한 '공지사항 및 질의답변(3)'의 3번 답변 내용중 ' <u>절감사유서 제출 없이도</u> ' 평가 가능한 항목은 상기 답변 적용	공통	1공구/ 2공구
2	Q. 상기 1번 질문과 관련, '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(평가 2)' 평가시 공종의 노무비 합계가 '0'원인 경우, 구성비율 대비가 불가한데 평가기준은?	A. 조사금액상 공종의 노무비 합계가 '0'원(노무비 비율 0%)으로 되어있으나 입찰서상 공종의 노무비를 반영하여 입찰하였다면, '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(평가 2)' 평가시 '노무비 적정구성 여부' 항목에 대해 1점 감점하여 평가합니다. (기타 비목들도 동일하게 적용)	공통	1공구/ 2공구
3	Q. 가이드라인 1-가-5)-나)-(2) 항의 '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'에 대한 평가시 노무비가 단일 직종 노무비가 아닌 경우, 세부공종금액(합계)이 세부공종기준금액(합계)의 100분의 90이상일 때 90점으로 평가 가능한지?	A. 당공사는 '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' 1-가-4)-가)-(1)항에 따라 일위대가에 대해서는 가중치 산정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, 세부공종이 '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'에 대한 평가시, ' <u>조사금액 미만</u> '으로 적용한 때에는 '0점'으로 평가합니다.('시중노임단가 미만' 아님)	공통	1공구/ 2공구